

과업지시서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2층 미당문고 라키비움 전시공간구성(전시연출)용역 -

2024.02.

동 국 대 학 교
관리처 시설안전팀

■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2층 미당문고 라키비움 전시공간구성(전시연출)용역

나. 위 치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2층 310-B227, B228(2개실)

다. 사업내용

항 목		내 용
전시물 제 작 설 치	전 시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체구조물 및 입구 월(Wall) 등 제작 설치 ■ 도자기 및 유품, 기타 미당 선생 물품 보유분(중앙도서관 제공) ■ 진열장 배치, 조명설비 설치, 쇼케이스 및 회의 테이블 배치 외
홍 보	홍 보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배너 또는 판넬 등 미당 선생 주요 약력 등 콘텐츠 외
기 타	그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시연출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	

라. 사업목적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내 서정주 시인 기념실인 ‘미당문고’ 라키비움 (Larchiveum=Library + Archive +Museum) 공간을 조성후 최신 복합문화 전시공간 및 미당 아카이브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마. 현장설명회 - 미실시, 현장 확인후 견적할 것

1) 현장설명회 미실시

2) 입찰 일시 - 구매관재팀 안내(우리대학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2. 입찰 조건

가. **용역기간 : 착수후 1주 이내(2024.02.25.까지 완료, 업체선정 즉시 착수준비)**

1) 용역기간 변경 가능한 사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사 불가능
-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으로 기간내 공사 불가능
-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의거 공사기간 변경이 필요할 시
- 기타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발생

2) 예정공정표 작성후 발주처 승인 득할 것

다. 질의응답 : 해당 없음

라. 현장 조건

1) 작업시간 (긴급공사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 기간 및 일정 조정할 수 있음)

가) 평일 : 08시 ~ 18시 (철거 및 소음작업 제외)

나) 주말 및 공휴일 : 08시부터 가능 (철거 및 소음작업 권장)

- 다) 공사기간 중 작업 불능일(공사일수 제외) : 입시 및 기타 교내 행사
- 2) 용전용수 - 발주자 부담 (단, 현장 설치비는 계약업체 부담)
- 3) 주차비 - 계약업체 부담 (유료)

마. 용역조건

- 1) 계약 즉시 착수 조건이며,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없음
- 2) 인원 자재 투입, 근무시간 조정으로 공기만회할 것
- 3) 이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한다면, 견적 시 반드시 반영 할 것(공사 중 추가비용 요구할 수 없음)
- 4) 발주자의 요청(문서발송)에 의한 공사 중지 이외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 없음
- 5) 발주자 업무지시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시행계획 및 방법 등을 공문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 미이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은 계약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바. 하자이행보증 조건

- 1) 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
- 2) 보증금율 : 3%

3. 사업 세부 지침

- 가. 우리대학은 「순수내역입찰방식」으로 별도의 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비용 산출은 현장여건(현장 여건 조사) 및 도면, 시방서(과업지시서), 기타 제공 자료의 사양에 따라야 한다. 공사기간(단기)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은 없다.(반드시 도면과 시방의 내용을 숙지 및 현장 확인 후 견적 할 것)
- 나. 설계도서(도면과 도면, 도면과 시방서)간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질의응답을 통하여 우리 대학으로부터 명확한 공사 방법 및 한계를 제시받아 견적하여야 한다. 질의 회신 내용에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사는 견적 시 상급사양(상위공법)으로 견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 중에 설계도서의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상급사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를 요청할 수 없다.
- 다.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교내외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 대자가 부담한다.
- 라. 일반사항

- ①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② 전시물은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③ 전시설비는 유물의 가치를 높이고 시각적 아름다움을 충족시킴으로써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④ 전시면은 그래픽패널 설치를 고려하여 면을 반듯하게 조정함으로써 이차 먼고르기 작업이 필요 없게 한다.
- ⑤ 전시물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친환경 제품(친환경페인트, 합판E1, 석고보드 중성, 판넬F1)이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연재 및 방염 처리된 재료를 사용한다.
- ⑥ 설명패널과 그래픽 디자인은 시안을 검토한 뒤 규격, 부착 위치 등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⑦ 전시시설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제작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며, 상세 공정 및 상이한 부분은 발주부서 및 감리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 ⑧ 본 전시의 전시시설 설치공사는 그래픽·배너 제작, 설치 외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설부제정 관련 규정 및 표준 설명서에 따른다.
- ⑨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조정으로 변경사항이 발생 할 시 발주부서와 감리,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 ⑩ 배너·현수막 등은 설치 후 수시로 확인하고 부속품을 교체하여 전시폐막일까지 형태가 온전하게 한다.
- ⑪ 기타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부서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마. 세부 지침

- ① 전시설계
 - 가. 제안요청서를 발주부서의 기획 의도에 따라 보완하여 설계 후 계약한다.
 - 나. 전시장의 관람 동선은 원활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전시실 내부 관람객 휴게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다. 부문별 주제에 따른 관련 유물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 ② 전시공간
 - 가. 공간구성
 - 전시장의 관람 동선은 원활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전시실 입구와 출구, 전시 아이템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부문별 주제에 따른 관련 유물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 전시실 정문 및 전시 파트별 입구를 전시 주제에 맞게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 전시의 대표유물 및 주제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전시연출 기법을 제안한다.
 - 나. 전시조명설비
 - 전시설계 시, 전시물의 전체조명 및 집중 조명 등 전시연출에 적합한 조명배치와 조명기구 등 조명연출계획을 수립한다.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조명기구 사용이 기본이며, 별도 필요시 조명기구·트랙·렌즈 등 부속품을 추가로 설치한다.
 - 조명 설치 시 조명 설치 요원을 배치하고 조명연출계획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명을 설치한다.
 - 신규조명 설치 시에는 유물의 종류와 전시기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스템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색성과 색온도 등을 계획 시 반영한다.

- 전기공사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시공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공사업체에 있다.
- 기존 각종 설비(전기·통신·방범·공조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발주부서와 의논해 시공하며, 전시종료 시 원상 복구한다.

다. 색채구성

- 부분별 차별성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되,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대별 색채 사용의 제약을 고려하고 역사성에 맞는 색채를 선택한다.

③ 전시시설

가. 전시실의 천장, 벽, 바닥, 홀 등의 마감 재료는 주위 시설 및 조명과 조화를 이루고 전시물 보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계획한다.

나. 유물 보존 및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전시 자재는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다. 진열장

- 발주부서가 보유한 진열장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신규 진열장은 제작·설치한다.
- 신규 진열장 제작 시 전시효과와 전시물 보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진열장을 설계하되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진열장과 조화되도록 제작한다.

※ 기존 및 신규 진열장을 설계내용에서 구분 표시

- 진열장과 유물 형태에 맞는 유물 받침대를 제작·배치한다.
- 진열장의 조명은 퇴색 방지용 형광등과 광섬유 혹은 LED 조명으로 설치하되, 가급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유물과 함께 배치되는 조습제 및 온습도계 등이 전시 관람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진열장 내부를 설계한다.

라. 전시보조물(전시대·받침대·패널·설명 카드·배너 등) 설치

- 전시연출에 필요한 받침대, 전시대, 실사출력물, 기타 전시 사인물 등은 전시물의 특성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디자인 연출한다.
- 유물 받침대·패널·설명 카드·배너 등은 유물의 안정적이고 무해한 거치·보존 및 시각 효과와 유지관리의 용이성·내구성 등을 보장하도록 재질·형태·색채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 전시 패널(사진 포함한 그래픽 패널)·배너·설명 카드는 교체용을 고려하여 적정량으로 제작한다.

마. 영상 설치연출

- 영상물은 최신기법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설비와 구성이 되도록 제안한다.
- 전시 분위기에 맞고 전시물의 이해를 도우며 관람객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영상물을 전시 시나리오에 따라 계획하여 제안한다.
- 영상물 설치는 영상 케이블·전기설비·거치대·영상 세팅 등 일체이며, 구매 또는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영상 연출에 필요한 빔프로젝터는 제작 영상에 최적화된 최신 기기를 사용하며, 사용 개수는 발주부서와 상의하여 정한다.

- 전시연출에 필요한 영상물의 제작·편집 및 외부기관 소장자료 저작권 구매 등 소요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바. 모형 설치연출

- 외부 소장 모형의 대여 시 모형의 운송·설치·보험 가입 등의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전시구성에 맞게 전시대와 보호시설을 제작한다.

- 전시 분위기에 맞고 전시물의 이해를 도우며 관람객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모형을 전시 시나리오에 따라 계획하여 제안한다.

④ 원고, 번역, 통역, 감수 등

가. 유물 목록 및 설명 원고는 발주부서가 제공한다.

나. 제작 중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전문가(감리) 자문을 충실히 이행한다.

다. 원고 작성 및 교정·감수자는 발주부서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라. 설명패널 제작을 위한 번역·교정·감수 등의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마. 전시연출을 위해 필요한 통역 및 번역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바. 영상·사진·그래픽·유물복제 등 전시물 제작과 관련한 외부기관 소장자료 사용 시 그에 따른 저작권 협의 및 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배너·현수막 제작

가. 디자인은 검토 결과에 따르며 원색분해 등은 최상으로 한다.

나. 규격은 설치 위치에 따라 5종 이내로 제작한다.

바. 착수 및 완료

① 전시물 제작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② 설계보완은 발주부서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검토를 마친 뒤 제작·인쇄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전시물 제작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한다.

나. 제작계획이나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제작·수행한다.

다. 전시물 제작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대상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제작자는 전시물 제작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제작과 관련한 제반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마. 전시물 제작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바. 준공된 결과물에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

사. 공사대금은 본교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된다.(용역 완수후 교내 행정절차에 따라 검수부서의 검수절차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은 발주처 요청시 진행)

아. 현장 안전관리 등 철저히 하고, 착수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착수서류를 제출한다. 준공시 발주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 특기사항

1. 기존 시설물의 파손에 유의하고, 자재 반입 및 작업시 유의한다. 기존 인프라에 대한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교체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면 및 제공 자료에 대한 협의는 감리와 우선 협의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타
 -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민원 발생시 작업 중단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다.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안전관리비 증빙으로 활용 가능)

라. 모든 자재는 샘플북을 현장에 구비하고, 발주처 담당자 현장 협의후 승인을 득한 후에 자재 발주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준공청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1) 공사완료 후 내·외부 공간에 대한 준공청소를 실시하고, 발주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바닥 왁싱작업 2회 이상 실시하며, 관련 사진대지 제출 필수) 준공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추가적인 청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일정을 수립하고 청소 실시한다.
- 2)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당일 교외로 반출하고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붙임 1. 도면 1부

2. 사진 참고자료 1부. 끝.